

서울 행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230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1. 강기갑 (000000-1000000)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607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7호 2. 권영길 (000000-1000000) 창원시 상남동 성원1차아파트 103-1103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7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여영학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변	론	2006. 12. 22.
판	결	2007. 2. 2.
선	고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부는 미국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 5.경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2006. 5. 19. 미국과 협정문 초안(이하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였다.

나. 이에 원고 권영길은 2006. 5. 30.에, 원고 강기갑은 2006. 6. 1.에 정부와 미국이 제시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 전문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피고에게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6. 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한·미 양국정부는 협정문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의 최종합의문은 타결 즉시 공개하고, 협상 중 생성문서는 발효 후 3년간 비공개 취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권영길의 보좌관인 이승원이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의 모든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이후 권리구제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권영길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이승원, 최성우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권영길이 2006. 6. 26.경 피고에게 한·미 FTA 통합협정문의 열람을 신청하였고, 원고 권영길의 보좌관인 이승원이 2006. 6. 28. 약 3시간 동안 외교통상부 6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결합한 통합협정문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

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지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도 원고 권영길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권영길씨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권영길 측이 피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권영길씨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거나 그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바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통상교섭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실리적이고 냉정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

보라고 할 수 없다.

(3) 한·미 양국이 이미 서로 협상을 개시한 상황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은 이미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이미 한·미 양국이 본 협상에 이용하고 있는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부는 2006. 2. 3. 미국과 함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006. 3. 6. 서울에서 한·미 FTA 제1차 사전준비협의를 개최하여 향후 협상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 초안 교환시기 등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6. 4. 17.과 같은 달 18.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를 개최하여, ① 협상분과 구성문제 : 상품무역분과(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의 관세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농업분과(농산품의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등 17개 분과의 설치, ②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는 협상 발효 후 3년간 비공개(다만 정부관계자, 국회 국내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수렴 및 정부 입장 수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보안준수를 전제로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 ③ 협정문 초안 교환시기(5. 19. 이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 정부는 2006. 5. 19. 미국과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서로 교환하였는데,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교역 관련 양국간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위생검역 논의를 위한 접촉선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농산물을 포함

한 상품의 관세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3) 정부는 2006. 6. 5.부터 같은 달 9.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FTA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17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으나, 농업분과, 위생검역분과, 섬유분과, 무역구제분과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입장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통합협정문은 추후 작성하기로 하였다.

(4) 정부는 2006.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서울에서 제2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한·미 양국이 상품분야에 대한 양허안 작성의 기본원칙에 합의한 반면 농산물분야에 대한 양허안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각각의 방식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여 2006. 8. 중순경에 일괄교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생·검역분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다만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이 지속)하였다.

(5) 또한 정부는 2006.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2006. 10.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제4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2006. 12. 4.부터 같은 달 8.까지 미국 몬타나(빅스카이)에서 제5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2007. 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제6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각 개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한 통합협정문의 작성 및 최종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6)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의 주요 내용과 한·미 FTA 협상결과를 보도자료로서 공개하고 있고, 원고 강기갑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자격으로 농림부에 요청하여 2006. 8. 10.과 같은 달 14. 농업협정문안을 열람한 바 있다.

(7) 국회는 2006. 7. 말경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미 FTA 특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한·미 FTA특위에서 정부로부터 한·미 FTA 관련 주요 쟁점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고 있다.

(8) 한편 피고는 한·미 FTA특위를 위해 국회 내 한·미 FTA특위 열람실에 회의가 개최되는 주에는 회의 개최 2일 전부터 개최 다음날까지 4일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주에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 사건 각 협정문을 포함한 협상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 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주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안업무규정상의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하는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제4조에서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Ⅲ급 비밀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규정 제4

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여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 훈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미국과 사이에 FTA 체결을 위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그 실질적 내용상으로도 위와 같은 Ⅲ급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적법하게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제2차사전준비협약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는 넓은 의미에서의 조약이며 조약준수의 원칙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상 조약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단일의 문서 또는 둘이나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국가간에 문서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단지 양국간의 협상의 편의를 위하여 협상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통상교섭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외교관계에는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외교관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정부가 미국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작성·교환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포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

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의 정보공개가 일반국민들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은 청구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반면 국회법 제122조 제1항, 제3항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제128조 제1항은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국회법 제122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서면질문권이나 제128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임을 전제로 일반국민보다 정보공개의 범위가 더 용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자국의 입장을 담은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상대국에 제시하고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협상을 개시하여 협상진행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협상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 단일한 통합협정문을 만들며,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수정제의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

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어 한·미 FTA 체결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 기업 등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 기업 상호간에도 이해관계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협상 전략 수정에 대한 요구로 협정문 내용이 당초 전략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업무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_____

 판사 이종림 _____

 판사 이종채 _____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끝.